한마음봉사단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20. 3. 1.
개정 2021. 7. 1.
개정 2024. 3. 1.
개정 2025. 8.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인간사랑 생명존중"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학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한마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및 기본요건) ① 봉사단의 활동은 교과봉사와 비교과봉사로 구분한다. (신설 2020.3.1.)(개정 2021.7.1.)

1. 교과봉사 :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 (개정 2021.7.1.)
2. 비교과봉사 : 학점취득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봉사활동 (개정 2021.7.1.)

② 봉사단의 모든 봉사활동은 본 규정 제28조에 부합하는 봉사기관에서 주관하는 비영리적인 활동으로서 자발성, 공익성, 이타성, 무보수성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봉사단의 모든 봉사활동은 목적, 시간, 장소, 대상자, 내용 등이 명료해야 한다. (개정 2021.7.1.)

제3조(사업) 본 봉사단은 ‘인간사랑・생명존중’의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봉사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문화를 정립하고 대학의 사회책무성 실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3.1., 2021.7.1.)

1.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1.7.1.)
2.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21.7.1.)
3. 지역사회 봉사협력기관 발굴 및 관리 (신설 2021.7.1.)
4. 기타 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업무 (신설 2021.7.1.)

제4조(위치) 본 봉사단은 성남캠퍼스에 운영부서를 둔다. (개정 2020.3.1., 2021.7.1.)

제2장 기 구

제5조(단장) ① 봉사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을 대표하며 학생처장이 한다. (개정 2020.3.1.)

제6조(운영부서) 봉사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팀을 두며, 각 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 2020.3.1., 2021.7.1.)

1. 학생봉사팀 : 학생 봉사활동의 개발 및 운영,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졸업인증(사회봉사 영역)을 위한 지원 및 관리 (신설 2020.3.1.)(개정 2021.7.1.)
2. 전공봉사운영팀 : 학과봉사단의 관리, 대학 내 다양한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3.1.)(개정 2021.7.1.)
3. 교직원봉사팀 : 교직원 봉사활동의 개발 및 운영 (신설 2020.3.1.)(개정 2021.7.1.)
4. 지역사회협력팀 :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봉사협력기관 발굴 및 관리 (신설 2020.3.1.)(개정 2021.7.1.)

제7조(운영팀장) (삭제 2020.3.1.)

제8조(직원) (삭제 2020.3.1.)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본 봉사단 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한다. (개정 2021.7.1.)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단장 부재 시에는 학생봉사팀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7.1.)

③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3.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20.3.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0.3.1.)

1. 봉사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
2. 봉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
3. 봉사단 제·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개정 2024.3.1.)
4.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 (신설 2020.3.1.)
5. 그 밖에 봉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신설 2020.3.1.)

제11조(위원) (삭제 2020.3.1.)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0.3.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1.)

제4장 사회봉사 활동

(제정 2021.7.1.)

제13조(봉사 인정 기준) ① 사회봉사는 본 규정 제28조에 부합하는 봉사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봉사 이수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연도의 사회봉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단, 봉사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결과를 일괄 인정하여 공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개인별 확인서를 갈

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봉사활동의 1일(또는 1건)의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다만, 재난, 재해, 긴급구호, 장기기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초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

제14조(운영) ① 봉사단의 사회봉사는 매년 초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개정 2021.7.1.)

②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봉사를 시행할 기관(단체)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개정 2021.7.1.)

③ (삭제 2021.7.1.)

제15조(봉사기관배정) 봉사기관 배정은 봉사지원자들이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 봉사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배정한다. (신설 2020.3.1.)

제16조(예비교육) ①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봉사단(또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비교과봉사의 경우는 필요 시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1.)(개정 2021.7.1.)

② 예비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시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1.)(개정 2025.8.27.)

③ 예비교육 수강시간은 봉사활동시간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최대 1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신설 2020.3.1.)(개정 2025.8.27.)

제17조(결과 보고) ① 봉사자는 봉사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소감문 포함)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활동결과를 일괄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1.)(개정 2021.7.1., 2025.8.27.)

② 봉사단은 대학에서 발생된 사회봉사활동을 취합하여 매년 결과보고서(운영백서)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1.7.1.)

제18조(인증서 발급)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급 할 수 있다. (신설 2020.3.1.)(개정 2021.7.1.)

제4장 학과봉사단 운영

(삭제 2021.7.1.)

제19조(운영) (삭제 2021.7.1.)

제20조(임기) (삭제 2021.7.1.)

제21조(성적처리) (삭제 2020.3.1.)

제22조(회의) (삭제 2020.3.1.)

제5장 사회봉사 교과의 운영 및 평가

(개정 2020.3.1., 2021.7.1.)

제23조(교과운영) ① 본교 재학생은 '사회봉사'(교양 필수) 교과를 수강신청 하고 재학기간 내에 이수하여 졸업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사회봉사"과목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한다.

제24조(운영)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배정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20.3.1., 2021.7.1.)

제25조(교과구성) '사회봉사' 교과의 구성은 기초사전교육 4시간, 담당교수 OT 2시간, 사회봉사 22시간 이상, 평가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6조(학점인정 및 성적처리) ① '사회봉사' 교과목의 학점은 1학점으로 하며 P(Pass) 또는 NP(Non Pass)로 구분한다. (개정 2021.7.1.)

② 지도교수는 기본소양교육, 봉사 기간 중 현장지도, 기말평가회를 통한 지도보고서 작성, 기관단체의 출석부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한다.

제27조(사회봉사 학점 이수자의 혜택) ① 봉사활동자 중 해당 봉사기관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국내의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해외봉사 선발 시 우대한다.

③ 사회봉사 수행 후 지도교수의 평가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심사하여 장학금을 수여 할 수 있다.

제28조(봉사기관 요건 및 의무) ① 봉사단이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3.1.)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
3.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비정치적 단체, 기업체(단체) 산하 복지재단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VMS) 인증기관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

② 본교 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기관은 봉사프로그램 승인요청서(소정양식)를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봉사단체 선정

(삭제 2020.3.1.)

제28조(선정기준) (삭제 2020.3.1.)

제7장 학생지도

제29조(학생지도) ①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 및 담당자는 수시로 봉사기관을 방문하여 활동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봉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조처한다. (신설 2020.3.1.)

②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3.1.)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